

의안번호	2217068
의 퇴 인	박성훈의원
회 답 일	2026. 5. 21.
추계번호	26B1110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드론산업의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, <u>이를 위한 안전한 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5조(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)	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제2항) <u><신 설> 6의2. 드론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</u>	의무규정
3	안 제9조의2(드론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)	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(이하 “정보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 1. 드론 관련 사고 현황·이력 및 <u>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</u> 등에 관한 정보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드론산업의 지원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조(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)	•미대상 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라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‘드론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하더라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임 - 현재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(‘23~’32)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, 제3차 계획은 ’27년 연구용역(용역비 2억원 예상)을 통해 수립 예정임

3	안 제9조의2(드론 정보 체계의 구축·운영 등)	•미대상 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현재 드론 정보체계(드론정보통합시스템)를 구축하여 사고·보험금 등 정보 수집·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('26년 6.1억원)을 편성하고 있으며, 개정안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'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'를 포함하더라도,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임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2. 상세 사유

□ 드론의 안전한 운용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(안 제3조제1항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의 안전한 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-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안전 및 산업활성화 등 안전한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드론의 안전한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예산
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	- (드론 상용화 지원)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시험·실증 지원, 드론 안전성 향상 지원 등 드론 활용 모델 조기 상용화 유도 - (드론 실증도시 구축) 지역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발굴·지원을 통해 국민 체감도 제고 및 사업화 기반 마련 - (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) 국내 드론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실증, 국제행사 개최·참가 지원 - (드론 정보포털 운영) 드론 시장동향, 드론 제품·업체, 활용 분야, 법령정보, 홍보 등 드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- (드론산업 실태조사) 국내 드론 제작·활용업체, 공공분야 드론 보유·활용 현황 등 드론산업 동향 파악 및 통계분석 - (드론 안전 및 사업관리)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체계적인 안전체계 확립 - (드론정보통합시스템) 드론의 생애주기 정보(기체·사업체, 사고·보험이력, 자격·교육, 비행승인 등)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안전관리 플랫폼 구축	24,731

자료: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의 안전한 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경우,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관련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 또는 신규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